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5 선고 2021가단5274352(본소), 2024가단5090050(반소) 판결
[공사대금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강두리, 김상원, 김선일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순관, 허경범, 오세준

변론 종결2024. 2. 6.

판결 선고2024. 3.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345,66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6.부터 2024. 3. 5.까지 연 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6,900,000원 및 이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4.부터, 56,7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나머지 112,2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8. 2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건물 전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그 후 2021. 1. 31.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1. 2. 22.경 이 사건 공사와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 견적서에 없는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마무리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79.26%이고, 이 사건 추가공사비는 59,022,6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¹⁾.

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 후 7일 이내에 선금으로 공사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21. 8. 기준으로 공시된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금리의 평균금리의

평균값은 4.09%이고, 시중은행의 공시된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3%를 더한 값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20. 9. 4. 64,400,000원을, 2020. 11. 30.

130,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감정인 D의 감정결과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79.26%이나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의 견적서대로 시공된 비율에 불과하고, 위 견적서 내용이 변경, 추가된 경우 기성고에서는 제외되고 추가 공사로 분류된 점, 일부 미시공된 부분과 공사자재 등 정리가 미흡한 점을 제외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되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보수공사로서의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이고, 이후 발견된 미시공 등 시공 상 흠결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하자에 불과하다. 다만, 원고는 약정공사대금이 아닌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44,120,800원(약정 공사대금 308,000,000원 X 79.26%)에서 피고가 기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194,700,000원(64,400,000원 +

130,300,000원)을 공제한 49,420,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선금으로 92,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64,4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28,000,000에 대하여 2020. 9.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그리고 1차 기성으로 2020. 11. 30. 18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130,3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56,70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선금으로 계약금의 30%인 92,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64,40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후 피고가 2020. 11. 30. 지급한 130,300,000원으로 위 미지급 선금 28,000,000원에 충당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1차 기성으로 피고가 2020. 11. 30.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187,0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원고가 위 28,000,000원과 56,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잡은 잔금 지급을 청구한 최후의 날인 2021. 5. 16.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42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6.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연 7%²⁾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시 첨부된 견적서와 달리 공사할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견적서 등이 메일로 교환된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9 내지 19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의 시행과 그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64,924,860원(59,022,600원+부가가치세 5,902,26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한 최후의 일인 2021. 5. 16.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연 7%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로 114,345,660원(이 사건 공사대금 49,420,800원 +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64,924,86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24. 2. 6. 후인 2024. 2.

26.에서야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본소는 2021. 10. 7. 제기되었는데 소장 부분이 수차례 송달되지 않자 2021. 12. 31. 공시송달 결정이 있었고, 그 후 2022. 3. 8.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이 되어 2022. 3. 29.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판결선고기일 전날인 2022. 3. 28. 변론재개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2. 7. 15. 이 사건 본소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사비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2. 7. 21. 이를 채택하여 감정절차가 진행되었다. 감정인은 2022. 8. 23. 피고에게 감정관련 참고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22. 9. 8. 의견서를 통해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2022년 추석연휴는 9. 12.까지이다)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2022. 12. 20.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감정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알렸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에게 '피고측 감정참고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2023. 1. 10.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감정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다 보니 예상보다 상당 부분 늦어지게 된 것이나 감정사항에 대한 의견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3.

1. 11. 피고에게 '그간 피고의 정상적이지 않는 사정으로 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원고측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할 의향이라면 더 이상의 소송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절차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측이 감정인에게 자료를 제출되지 않아 감정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 법원은 2023. 2. 9. 피고에게 '피고측이 고의적으로 소송절차의 지연을 획책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바, 법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바로 후속 감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재판절차안내를 보냈다. 감정인은 2023. 2. 26.

현장감정 진행을 알리면서 이 사건 건물이 병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휴진일인 일요일에 현장 감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피고의 협조사항으로 감정목적물 개방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23. 2. 10. 감정인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출입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3. 2. 21. 감정인의 현장조사기일을 피고의 하자감정 신청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이 법원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2023. 7. 21. 감정서가 제출되었고, 피고는 2023. 12. 6. 준비서면을 통하여 감정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정인에게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 및 하자감정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히며 조속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24. 2. 6. 제6회 변론기일 당일에 조속히 하자 내역을 충실히 정리하여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하며 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기일변경신청은 불허되고 2024. 2. 6. 변론이 종결되어 2024. 3. 5.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판결선고를 1주일 앞둔 2024. 2. 26. 반소장을 제출하며 변론재개신청, 하자감정 신청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3. 1. 10.자 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에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만 간략히 언급하면서 반소 손해배상 청구의 준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한 이래 반소를 제기할 의향이라면 더 이상의 소송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는 재판진행안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다가 2024. 2. 26.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1년 1개월의 기간 동안 위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거가 없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야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본소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이고, 소가 제기된 지 2년 3개월여가 경과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쟁의 조속한 종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돌연 이 사건 반소를 허용하여 심리를 진행한다면 하자 감정 등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이 사건 반소로 인하여 이 사건 본소에 관한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 명백하다.

③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나 지체상금채권은 이 사건 반소가 아닌 별소 제기를 통하여서도 권리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원고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만 청구함으로써 일부 미시공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약정 공사대금에서 이미 공제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270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전연숙

1) 피고는 2013. 12. 6. 준비서면에서 감정인이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기성고로 감정한 부분, 양적 확대나 질적 확대에 해당하는 부분도 추가 공사가 아닌 기성고로 감정한 부분, 기성고 비용이 중복 산정한 부분, 추가공사가 아님에도 추가공사로 판단한 부분이 있으며 공사비가 과대산정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정인이 추가공사비로 감정한 65,7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감정서에서 추가공사비

해당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콘센트 및 스위치 설치 부분 4,830,000원(갑4호증 정산내역서 중 추가공사 10-16 콘센트 및 스위치 설치 부분)은 위 감정결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추가공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준공검사용 임시 조명, 전열기구 설치, 철거공사 부분(갑 제4호증 정산내역서 중 추가공사 10-4)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사의 경위 등을 볼 때 원고가 철거된 기구류를 수거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추가공사비로 산정된 6,733,400원 중 재료를 제외한 4,830,000원만을 추가공사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추가공사비는 감정인의 감정금액 65,756,000원에서 콘센트 및 스위치 설치 부분 4,830,000원과 임시 조명 및 전열기구 설치, 철거공사 부분 중 재료비 부분 1,903,400원(6,733,400원 - 4,830,000원)을 공제한 59,022,600원이 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주장은 감정의 내용,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금리의 평균금리의 평균값은 4.09%이고, 시중은행의 공시된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3%를 더한 값이므로 약정이율은 7.09%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연 7%의 이율을 적용한다.